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h1>보도자료</h1> <p>“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p>	 페이스북 @kcanews  인스타그램 @kca.go.kr	
이 자료는 10월 24일(수) 조건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방송인터넷 매체는 10월 23일(화) 12시]			
배포일	2018년 10월 22일(월) (총 11쪽)	담당부서 담당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김제란 팀 장 (043-880-5841) 강성호 조사관 (043-880-5846)

프랜차이즈 음식점, 절반 이상 원산지 표시 부적합

-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필요 -

최근 수입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내산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지고, 원산지 표시 정보가 식품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직장인이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일반음식점 80개*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직장인들의 주요 8개 점심·저녁메뉴를 취급하는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 40개 각 2곳

□ 조사대상의 53.8%, 원산지 표시 부적합해

조사대상 80개 중 43개 업소(53.8%)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었다.

* 33개 업소(41.2%) 적합, 4개 업소 폐업(2018.7.9. 기준)

** 43개 업소의 부적합 사례 중복 확인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35건)’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 및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 6건, ‘쇠고기 식육의 종류(국내산 한우·육우·젓소) 미표시’ 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41건)’는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를 음식명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11건,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9건,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 8건 등의 순이었다.

* 글자 크기 :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 표시판 크기 : 29cm x 42cm(A3 사이즈) 이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 **현행 규정상, '원산지 표시판'만으로는 원산지 정보 확인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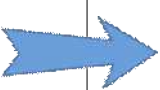
광우병(쇠고기), 구제역(쇠고기·돼지고기), 다이옥신·바이러스 오염(돼지고기), 조류독감(닭고기) 등의 안전성 문제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조사 결과, 식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구이 전문점(고깃집)에서도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아 해당 업종에는 원산지 표시판과 함께 메뉴판·게시판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갈빗살'과 같이 쇠고기·돼지고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식육 부위의 경우 원산지 표시만으로는 식육의 품목을 파악하기 어려워 식육 품목명·부위[(예시) 쇠고기(갈빗살) : 국내산]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수 음식점에서 다양한 원산지의 원재료(쇠고기·돼지고기 등)를 메뉴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메뉴의 정확한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이 시급했다.

[**음식명 표시 원산지 표시판(개정안) 예시**]

음식명이 표시되지 않은 원산지 표시판		음식명을 표시한 원산지 표시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원산지 표시판</th> </tr> <tr> <th>품목명</th> <th>원산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쇠고기</td> <td>국내산 한우</td> </tr> <tr> <td>호주산</td> </tr> <tr> <td>돼지고기</td> <td>국내산</td> </tr> </tbody> </table>		원산지 표시판		품목명	원산지	쇠고기	국내산 한우	호주산	돼지고기	국내산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원산지 표시판</th> </tr> <tr> <th>품목명</th> <th>음식명</th> <th>원산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쇠고기</td> <td>우삼겹</td> <td>국내산 한우</td> </tr> <tr> <td>설렁탕</td> <td>호주산</td> </tr> <tr> <td>돼지고기</td> <td>돈가스</td> <td>국내산</td> </tr> </tbody> </table>			원산지 표시판			품목명	음식명	원산지	쇠고기	우삼겹	국내산 한우	설렁탕	호주산	돼지고기	돈가스	국내산
원산지 표시판																												
품목명	원산지																											
쇠고기	국내산 한우																											
	호주산																											
돼지고기	국내산																											
원산지 표시판																												
품목명	음식명	원산지																										
쇠고기	우삼겹	국내산 한우																										
	설렁탕	호주산																										
돼지고기	돈가스	국내산																										

□ **음식 주문 시 원산지 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청한 결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가 완료됐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고깃집 등 구이용 식육 취급 음식점의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육 품목명·부위 병기 등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 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병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	---

< 붙임 >

1 일반 현황

가. 국내규정

□ 표시기준

-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 투명한 유통 구조 확립을 통한 음식점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2007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¹⁾가 도입됨.
 - 2007년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됐고, 2008년부터 쌀·배추 김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확대 시행됨.
 - 2016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2017년부터는 표시대상이 20개 품목으로 확대됨.
- (원산지 표시판) 원칙적으로 업소 내 모든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아래 기준에 따른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원산지 표시판 표시기준*]

구 분	표시기준
제목	• “원산지 표시판”으로 표시
크기	• 29cm x 42cm(A3 사이즈) 이상
글자 크기	•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
글자색	•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부착 위치	•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 •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 음식 제공 장소가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경우 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된 메뉴판을 제공해야 함.

1) 「식품위생법」 개정(2005.12.23.), 시행(2007.1.1.)

□ 표시대상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은 20개 품목으로 음식점에서 동 원재료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품목*]

구분	품목
농산물 (8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 (12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건제품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 특히, 쇠고기는 원산지 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를 국내산 한우·육우·젓소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함.

※ (예시) 소갈비(쇠고기 : 국내산 한우), 등심(쇠고기 : 국내산 육우)

- 국내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배추김치는 “배추김치”로 표시 후 괄호 안에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해야 하고, 수입 배추김치는 제조·가공한 국가명을 표시해야 함.

가. 조사대상

□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품목을 사용한 일반음식점 80개

- (대상) 직장인들의 주요 8개 점심·저녁메뉴*를 취급하는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 40개 각 2곳씩 선정

* 설렁탕, 육개장, 찌개, 돈가스, 면류, 순대, 부대찌개, 고기

나. 원산지 표시실태

□ 조사대상 80개 중 43개 업소(53.8%)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는데,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었음.

* 33개 업소(41.2%) 적합, 4개 업소 폐업(2018.7.9. 기준)

[원산지 표시 부적합 현황]

구분	세부 사유	부적합 업소 수*
미표시· 허위표시 (35건)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	7 (8.8%)
	일부 메뉴(주 메뉴가 아닌 부메뉴 및 반찬) 등 원산지 표시 누락	7 (8.8%)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	6 (7.5%)
	쇠고기 식육의 종류(국내산 한우·육우·젓소) 미표시	5 (6.3%)
	가공품(햄·소시지·콩 등)의 원산지 미표시	5 (6.3%)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누락	3 (3.8%)
	국산만 쓴다고 광고했으나 원산지 표시판에는 외국산으로 표시	1 (1.3%)
	장소가 벽으로 구분된 경우 벽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미표시	1 (1.3%)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 (41건)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가 음식명보다 작음	13 (16.3%)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가 60pt(메뉴명은 30pt)보다 작음	11 (13.8%)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29cm×42cm(A3 사이즈)보다 작음	9 (11.3%)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	8 (10.0%)

* 한 업소에서 복수 위반한 경우를 포함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구이용 식육 취급 음식점,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 광우병(쇠고기), 구제역(쇠고기·돼지고기), 다이옥신·바이러스 오염(돼지고기), 조류독감(닭고기) 등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안전성 문제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 정보는 음식 메뉴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금번 실태조사 결과, 메뉴가 단순한 구이 전문점(고깃집)에서도 식육의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구이용 식육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모든 메뉴판·게시판에 식육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필요함.
-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의 적용을 구이 전문점(고깃집)에 한해 배제하는 것이 필요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

2.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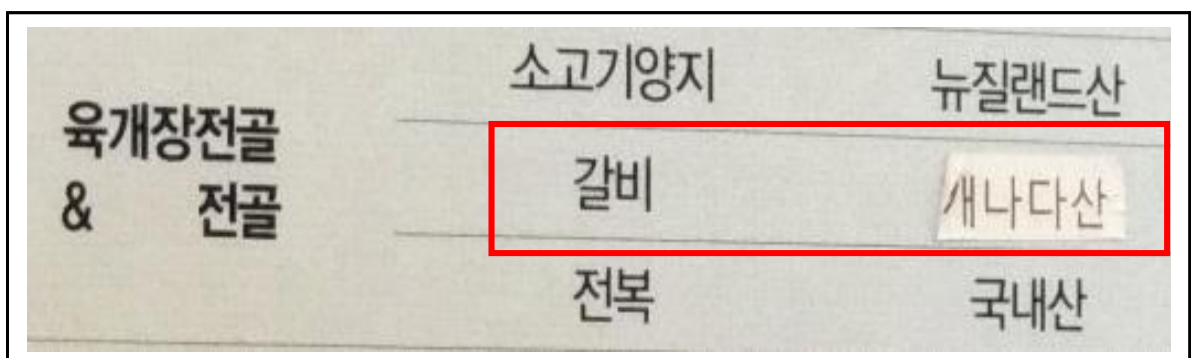
가.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 1)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아래 2)에 따라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쇠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의 품목명 표시 규정 명확화

- ‘갈빗살’과 같이 쇠고기·돼지고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식육 부위의 경우 원산지 표시만으로는 소비자가 해당 품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음.

[식육의 품목명 미표시 사례]



- 원산지 표시판에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 명확화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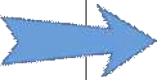
[식육의 품목명을 표시한 원산지 표시판]

원산지 표시판		
품목명	음식명	원산지
쇠고기	차돌박이	국내산 한우
	꽃등심	호주산
돼지고기	삼겹살	칠레산
	갈비살	국내산

□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 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병기

- 다양한 원산지의 동일 식육 품목(쇠고기·돼지고기 등)을 다수의 메뉴에 사용하게 되면, 원산지 표시판에 원산지를 구분 표시하더라도 실제 어떤 메뉴에 어떤 원산지의 식육 품목이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실정임.
- 현행 규정상, 제공되는 모든 음식에 사용된 특정 원재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음식명 표시 없이도 일괄 표시를 통해 원산지 정보 전달이 가능하지만 개별 표시(다양한 원산지의 동일 원재료를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음식명을 병기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음식명 표시 원산지 표시판(개정안) 예시]

음식명이 표시되지 않은 원산지 표시판		음식명을 표시한 원산지 표시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원산지 표시판</th> </tr> <tr> <th>품목명</th> <th>원산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쇠고기</td> <td>국내산 한우</td> </tr> <tr> <td>호주산</td> </tr> <tr> <td>돼지고기</td> <td>국내산</td> </tr> </tbody> </table>		원산지 표시판		품목명	원산지	쇠고기	국내산 한우	호주산	돼지고기	국내산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원산지 표시판</th> </tr> <tr> <th>품목명</th> <th>음식명</th> <th>원산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쇠고기</td> <td>우삼겹</td> <td>국내산 한우</td> </tr> <tr> <td>설렁탕</td> <td>호주산</td> </tr> <tr> <td>돼지고기</td> <td>돈가스</td> <td>국내산</td> </tr> </tbody> </table>			원산지 표시판			품목명	음식명	원산지	쇠고기	우삼겹	국내산 한우	설렁탕	호주산	돼지고기	돈가스	국내산
원산지 표시판																												
품목명	원산지																											
쇠고기	국내산 한우																											
	호주산																											
돼지고기	국내산																											
원산지 표시판																												
품목명	음식명	원산지																										
쇠고기	우삼겹	국내산 한우																										
	설렁탕	호주산																										
돼지고기	돈가스	국내산																										

[음식점 원산지 표시실태 조사 결과]

구분	업소명		메뉴판· 게시판 글자크기	원산지 표시판 글자크기	원산지 표 시판 사이즈	원산지 표시판 표시위치	식육의 품목명**	모든메뉴 원산지 표시***	거짓· 혼동우려 표시	쇠고기 식육의 종류****	가공품 원산지	음식명 누락	광고와 원산지 상이	구분된 공간마다 원산지 표시*****
	사업자명	지점												
찌 개	돈가네김치찌개	본사직영점	○	○	○	○	○	○	○	○	○	○	○	○
		교대점	X	○	X	○	○	○	○	○	X	○	○	○
	명동찌개마을	종로점	○	○	○	○	○	○	○	○	X	○	○	○
		수유점	X	○	○	○	○	○	○	○	○	○	○	○
	밥장인돼지찌개	홍대점	○	○	○	○	○	○	○	○	○	○	○	○
		방이점	○	○	X	○	○	○	○	○	○	○	○	○
	배부장찌개	산본직영점	○	○	○	○	○	○	○	○	X	○	○	○
		테라타워점	○	○	○	○	○	○	○	○	X	○	○	○
	얼큰이찌개마을	잠실점	○	X	X	○	○	○	X	○	○	○	○	○
		대치점	○	X	○	○	○	○	X	○	○	○	X	○
부적합 업소 수			2	2	3	0	0	0	2	0	4	0	1	0
돈 까 스	가츠몽	교대점	○	○	○	○	○	○	○	○	○	○	○	○
		학동점	○	○	○	X	○	○	○	○	○	○	○	○
	기소야	삼성점	X	○	○	X	○	X	○	○	○	○	○	○
		을지로점	○	X	X	○	○	○	○	○	○	○	○	○
	미소야	강남역1호점	○	○	○	○	○	○	○	○	○	○	○	○
		쌍문점	○	○	○	○	○	○	○	○	○	○	○	○
	오니기리와 이규동	교대메가스터디점	○	X	X	X	○	○	○	○	○	○	○	○
		강남역점	○	○	○	○	○	○	○	○	○	○	○	○
	홍익돈까스	동탄2신도시직영점	○	X	○	○	○	○	○	○	○	○	○	○
		회기역점	○	X	○	○	○	○	○	○	○	○	○	○
부적합 업소 수			1	4	2	3	0	1	0	0	0	0	0	0

* 업소 내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부착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는 주출입구 정면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식육의 품목명
*** 일부 메뉴의 원산지 표시를 누락한 경우 부적합

구분	업소명		메뉴판· 게시판 글자크기	원산지 표시판 글자크기	원산지 표 시판 사이즈	원산지 표시판 표시위치	식육의 품목명**	모든메뉴 원산지 표시***	거짓· 혼동우려 표시	쇠고기 식육의 종류****	가공품 원산지	음식명 누락	광고와 원산지 상이	구분된 공간마다 원산지 표시*****	
	사업자명	지점													
면류	명동칼국수 샤브샤브	강남대로점	X	○	○	○	○	X	○	○	○	○	○	○	
		세종아띠몰점	○	X	X	○	○	○	○	○	○	○	○	○	○
	서가앤육	노원점	○	○	○	○	○	○	○	○	○	○	○	○	○
		서울중로점	○	○	○	○	○	○	○	○	○	○	○	○	○
	포메인	서울시청점	○	○	○	○	○	○	○	○	○	○	○	○	○
		문정법조단지점	○	○	○	X	○	○	○	○	○	○	○	○	○
	하코야	종로구청점	○	○	○	○	○	○	○	○	○	○	○	○	○
		사당파스텔시티점	○	○	○	○	○	○	○	○	○	○	○	○	○
	홍콩반점 0410	문정역테라점	○	○	○	○	○	○	○	○	○	○	○	○	○
		교대역점	○	○	○	○	○	○	○	○	○	○	○	○	○
부적합 업소 수			1	1	1	1	0	1	0	0	0	0	0		
부 대 찌 개	놀부부대찌개	강남씨티점	○	○	○	○	○	○	○	○	○	○	○	○	
		문정테라타워부대점	○	○	○	○	○	X	○	○	○	○	○	○	
	박가부대	덕성여대점	○	○	○	○	○	○	○	○	○	○	○	○	
		롯데피트인산본점	○	○	○	○	○	○	○	○	○	○	○	○	
	신의주부대찌개	안암점	X	○	○	○	○	○	○	○	X	○	○	○	
		방이동점	○	○	○	○	○	○	○	○	○	○	○	○	
	이태리부대찌개	학동역점	○	○	○	○	○	○	○	○	○	○	○	○	
		강남역점	○	○	○	○	○	○	○	○	○	○	○	○	
	킹콩부대찌개	장안아트몰링점	○	○	○	○	○	○	○	○	○	○	○	○	
		역삼점	○	○	○	○	○	○	○	○	○	○	○	○	
부적합 업소 수			1	0	0	0	0	1	0	0	1	0	0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젓소)를 원산지와 함께 표시

***** 음식 제공 장소가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경우 장소별로 원산지를 표시

구분	업소명		메뉴판· 게시판 글자크기	원산지 표시판 글자크기	원산지 표 시판 사이즈	원산지 표시판 표시위치	식육의 품목명**	모든메뉴 원산지 표시***	거짓· 혼동우려 표시	쇠고기 식육의 종류****	가공품 원산지	음식명 누락	광고와 원산지 상이	구분된 공간마다 원산지 표시*****
	사업자명	지점												
설령탕	본설령탕	종로구청점	○	○	○	X	○	X	○	○	○	○	○	○
		무교점	○	○	○	○	○	X	○	○	○	○	○	○
	신단설령탕	본점	X	○	○	○	○	○	○	X	○	○	○	○
		미아점	X	○	○	○	○	X	○	○	○	○	○	○
	신선설령탕	서초점	○	○	○	○	○	○	○	○	○	○	○	○
		산본점	○	○	○	○	○	○	○	○	○	○	○	○
	신촌설령탕	본점	○	X	X	○	X	○	○	○	○	X	○	○
		서울고속터미널점	○	○	○	○	X	○	○	○	○	○	○	○
	한촌설령탕	역삼점	○	○	○	○	○	○	○	○	○	○	○	X
		강남역점	○	○	○	○	○	○	○	○	○	○	○	○
부적합 업소 수			2	1	1	1	2	3	0	1	0	1	0	1
순대국	담소사골순대	강남점	X	○	○	○	X	○	○	○	○	○	○	○
		안양두산벤처다임점	X	○	○	○	○	○	○	○	○	X	○	○
	무봉리 토종순대국	의정부직영점	X	○	○	X	○	○	○	○	○	X	○	○
		서초점	○	○	○	○	X	○	○	○	○	○	○	○
	신의주찹쌀순대	코엑스점	○	○	○	○	○	○	○	○	○	○	○	○
		산본점	○	○	○	○	○	○	○	○	○	○	○	○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신림점	○	X	X	○	○	○	○	○	○	○	○	○
		수유점	○	○	○	○	○	○	○	○	○	○	○	○
	큰맘할매순대국	잠실본점	○	○	○	○	○	○	X	X	○	○	○	○
		산본역점	○	○	○	○	○	○	○	X	○	○	○	○
부적합 업소 수			3	1	1	1	2	0	1	2	0	2	0	0

구분	업소명		메뉴판· 게시판 글자크기	원산지 표시판 글자크기	원산지 표 시판 사이즈	원산지 표시판 표시위치	식육의 품목명**	모든메뉴 원산지 표시***	거짓· 혼동우려 표시	쇠고기 식육의 종류****	가공품 원산지	음식명 누락	광고와 원산지 상이	구분된 공간마다 원산지 표시*****
	사업자명	지점												
육 개 장	셰프이국수앤 육개장	코엑스점	○	○	○	○	○	○	○	○	○	○	○	○
		역삼테헤란점	X	○	○	○	○	○	○	○	○	○	○	○
	육대장	교대직영점	○	○	○	X	○	○	○	○	○	○	○	○
		서울시청점	○	○	○	○	○	○	○	○	○	○	○	○
	육마니	윤중점	○	○	○	X	○	○	○	○	○	○	○	○
		분당미금점	○	X	○	○	X	○	○	○	○	○	○	○
	이화수 전통육개장	서울강남점 ^{a)}	-	-	-	-	-	-	-	-	-	-	-	-
		문정법조타운점	○	○	○	○	X	○	○	○	○	○	○	○
	홍익공중 전통육개장	역삼점	X	○	○	○	X	○	X	X	○	○	○	○
		대전북합터미널점	○	○	○	○	○	○	X	X	○	○	○	○
부적합 업소 수			2	1	0	2	3	0	2	2	0	0	0	
고 기 집	새마을식당	삼성코엑스점	○	○	○	○	○	○	○	○	○	○	○	○
		남부터미널점	○	○	○	○	○	○	○	○	○	○	○	○
	신마포갈매기	목동점	○	○	○	○	○	X	○	○	○	○	○	○
		방학점 ^{a)}	-	-	-	-	-	-	-	-	-	-	-	-
	영터리생고기	서대문점	X	○	○	○	○	○	X	○	○	○	○	○
		강남역삼점	○	X	X	○	○	○	○	○	○	○	○	○
	하남돼지집	노원점 ^{a)}	-	-	-	-	-	-	-	-	-	-	-	-
		서울대입구역점	○	○	○	○	○	○	○	○	○	○	○	○
	화통삼	남영점 ^{a)}	-	-	-	-	-	-	-	-	-	-	-	-
		산본역점	○	○	○	○	○	○	○	○	○	○	○	○
부적합 업소 수			1	1	1	0	0	1	1	0	0	0	0	
총 부적합 업소 수			13	11	9	8	7	7	6	5	5	3	1	

a) 2018.7.9. 기준, 4개 업소가 폐업하여 조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음.